

대전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105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12. 10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5. 2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7. 9. 12. 접수 제43096호로 마친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11. 28. 주식회사 E로부터 신용 카드를 발급받고 신용 카드 거래 및 카드 대출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7. 20. 신용 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에 주식회 E는 D에 대하여 5, 574, 322원(=원금 3, 356, 920원 +법조치 비용 19, 975원 +연체이자 2, 197, 42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7. 5. 원고에게 위채권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도 하고, 2018. 8. 27.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8.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전 267호로 D에 대하여 '5, 994, 646원 및 그중 3, 356, 920원에 대하여 2019. 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 14. D에게 송달되어 2019. 1. 29. 확정되었다.

라. F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하다가 상속인으로 G, D, 피고, H(각 상속분 1/4)을 두고 2017. 5. 29.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9.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위상속 재산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 협의'라 한다) 당시 D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주식회사 E의 D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등 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은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주식회사 E에 대한 신용 카드 대금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D이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D은 이 사건 분할 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였고 D을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를 알고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는 D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D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2017. 9. 12. 접수제 4309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권세진

별지